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수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특별관리임산물(산양삼)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 기준, 비료 구분을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전문기관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하며,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보완(안 별표2)

- 생산적합성조사 조사항목을 품질검사와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과 같도록 검사기준을 0.001ppm(=mg/kg)에서 0.01ppm(=mg/kg)으로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유기질비료의 분류를 보통비료에서 부산물비료에 포함되도록 조항 수정(안 제17조의4)

- ‘유기질비료’를 영 제17조의4 제3항제2호에서 제3호로 변경함

* 근거 법률인 「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」(농촌진흥청 고시)에서 ‘유기질 비료’는 ‘부산물비료’로 분류됨

다.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(안 제25조의3)

- 특별관리임산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양삼 산업관련 사업 중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종자·종묘 증식·보급 및 생산·가공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함

라.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확화(안 별표3)

- 과태료 가중처분 시 과잉, 임의행정 및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하여 위반행위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제외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9월~10월 예정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의4제3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“미생물비료”를 “유기질비료, 미생물비료”로 한다.

제25조의3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종자·종묘 증식·보급 및 생산·가공 사업 지원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 제1호 나목중 “기간”을 “가중처분 적용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영의 제17조3제2항 별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청한 생산적합성조사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생산적합성조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제17조3제2항 별표2의 개정 전에 생산적합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생산적합성조사 기준(제17조의3제2항 관련)

(단위: mg/kg)

조사항목	적합기준
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른 항목	0.01 이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4(생산과정의 확인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. 1. (생 략) 2. 「비료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. <u>다만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 비료는 제외한다.</u> 3. 「비료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<u>미생물비료는 제외한다.</u> ④ (생 략) 제25조의3(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)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1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14. (생 략)</u>	제17조의4(생산과정의 확인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<단서 삭제></u> 3. ----- -----. ----- <u>유기질비료, 미생물비료는 -----.</u> ④ (현행과 같음) 제25조의3(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)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종자</u> <u>· 종묘 증식 · 보급 및 생산 ·</u> <u>가공 사업 지원</u> 15. (현행 제14호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	
연 락 처	(042) 481 - 1206